

다솜의집 화장실 누수 및 보수공사 수의계약 공고

1. 사업개요

사업명	다솜의집 화장실 누수 및 보수공사	
사업장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대신1길 49-51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사업개요	다솜의집 생활실(화장실) 누수 및 보수공사 1식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49,950,000원	45,409,091원	4,540,909원

2. 공고내용

- 가. 공고기간: 2024. 7. 4. ~ 2024. 7. 15. 13:00
- 나. 접수마감: 2024. 7. 15. 13:00
- 다. 업체선정: 2024. 7. 18.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가. 참여방식: 현장 확인 후 견적서 제출
- 나. 응모자격
 - 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2)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1항의 의한 수의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 3) **지역제한(충청북도)** 대상 용역입니다.

4. 견적서 제출 방법

- 가. 본 계약은 총액 견적 계약입니다.
- 나. 본 계약의 견적서 제출은 현장 직접 제출 방식입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6.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시에 다솜의집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설계도서 검토 부족으로 발생 되는 모든 문제는 해당 업체의 책임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는 부정당업자로 불이익 처분되니 반드시 설계도서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설계도서 열람 및 사업 관련 문의

· 설계도서 열람 : 다솜의집 / 문의처 : 다솜의집 사무국장 043)294-7412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4. 7. 4.

다솜의집 원장



【붙임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4.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다솜의집 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